



보 도 자 료

2015년 10월 7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2110-1520)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황지은 사무관(☎2110-1523)

제공일: 2015. 10. 7.(수)

방통위, 2015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월 7일 「2015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5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4월 1차 심사 시 5개 업체, 8월 제2차 심사 시 8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제3차 허가 계획」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

※ 위치정보사업자 :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45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올해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 허가 심사이다.

붙임 1. 2015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사항. 끝.

2015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제3차 허가 심사

- 접수기간 : 2015. 10. 8.(목) 09:00 ~ 2015. 10. 27.(화) 18:00
-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ekcc.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허가 신청서, [방문제출]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콤팩트디스크(CD) 1벌 방문 제출
-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관련 규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2015-16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2014-20호)

□ 방문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427-700)
- 문의 전화번호 : 02-2110-1528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사항

1. 「위치정보사업 허가」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 사업계획서는 전체 요약문(25쪽 이내)과 기본사항, 영업계획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표지 포함 전체 150쪽 이내)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등
- (기술계획)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2.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사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실시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

심사항목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점수
기본부문	· 재무구조의 건전성	8
영업부문	·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8
	·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4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4
	·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4
	·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 인적보안	6
기술부문	·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25
	·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5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8
	·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 관리	6
	·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14
총 점		100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2015-16호) 참조